

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개정 주요내용

<2020.7.9(목), 대학지원1팀>

□ 개정 취지 및 기본방향

- (개정취지) 국립대학회계 예산·편성 지침 개정으로, 재정지원사업비에 대한 '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(이하 교연비)' 승인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,
 -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내부교직원 수당(강사료, 원고료 등) 및 연구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
 - ※ 기존 내부교직원 수당 및 연구비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연비로 편성하였으나, 재정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목(운영수당, 연구용역비 등)으로 편성 가능
- (기본방향) 대학현장의 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 자율성을 유지하되 사업관리 책무성을 동시에 고려

□ 관련 경과

- '20년 사업 주요 추진방향 관련 의견수렴(온라인) : '20.3.18 ~ 3.20
- '20년 기본계획(안) 및 사업추진 관련 주요대학 관계자* 회의 : '20.4.2
 - *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장, 유형별(거점, 지역중심, 교원양성) 협의회장 등
- 사업 관리 지침 개선 관련 사전 의견접수(온라인) : '20.3.27 ~ 4.8
- 국립대학회계 예산·편성 지침 개정 : '20.6., 교육부
- 사업 관리 지침 개정(안) 의견수렴(서면, 협의회 협조) : '20.6.29 ~ 7.1

□ 개정 주요내용

[사업 관리·운영 지침]

- '20년 기본계획과 일관성을 위하여 관련 문구 지침에 명시
 - 자율 협의체 구성·운영,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

제8조(사업수행주체) ⑤ 대학은 원활한 사업수행 및 성과확산 추진, 국립대학 간 협력 등을 위하여 자율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(신설)

제18조(사업비 지원)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간의 교류, 사업홍보, 공동사업, 자률컨설팅 등의 다양한 활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.(신설)

- 사업추진 상 불가피한 상황발생에 따른 대응 필요에 따라 **사업비 이월 관련 문구 변경**

제21조(사업비의 이월) ① 사업비는…<중략>…사업비의 10%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. <이하생략>
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월현황을 차년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.
<수정(안)>
 ② 전문기관의 장은 **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, 제1항에서 정한 이월 범위를 조정하거나,** 이월현황을 차년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.

[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]

- **내부교직원 수당지급 관련 ‘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’ 승인 삭제 (국립대학 회계지침 수정과 연계)**
 - **(기존)** 기존 내부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,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강의료, 원고료, 정책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
 - ※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, ‘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’으로 편성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집행
 - **(변경(안))** 기존 내부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, 사업계획에 따른 강의료, 원고료, 정책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
 - ※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·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(운영수당 등)으로 편성 및 집행
- **기타 개선의견 반영 및 주요 문의는 FAQ 제작·배포**
 - 협의회비 편성 관련 세부내역 명시, 장비구입 예산변경 관련 절차 등
 - ※ 개선의견 중 기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FAQ로 작성하여 별도 안내(도서 구매 중앙관리 관련, 시상금 및 기념품 집행, 장학금 지급 관련 문의 등)

□ 행정사항

○ 예산편성 유의사항

- 사업추진 관련 내부교직원 수당(강사료, 원고료 등) 및 연구비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·집행 지침의 운영수당 또는 연구용역비로 편성 가능

※ 단, 기존 교연비 승인을 통한 예산편성과 비교하여 운영수당 등의 편성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

- 연도별 총 예산범위내에서 각 세부내역별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나, 사업목적 부합성을 고려하여 **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**

○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

- 컨설팅 시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, 특정항목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조정 권고 가능 (차년도 연차평가 시 반영)

□ 추진 일정(안)

-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개정 공지 : 7월초
- '20년 사업계획서 접수 : 7월중
- 사업비 2차 교부 : 7월중
-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 : 7월말

붙임 :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신·구 대비표

별첨 :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지침 전문(2020.7월 개정)

1 사업 관리·운영 지침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~제7조</p> <p>제8조(사업수행주체) ①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.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공간 및 행정지원 3.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 4.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. 본 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사항 준수 6. 대학의 자체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7.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<p>②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, 교무위원급으로 사업추진단장을 임명하여 대학 내 각 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,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내·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</p>	<p><변경사항 없음></p> <p>①~④ 좌동</p> <p>⑤ 대학은 원활한 사업수행 및 성과확산 추진, 국립대학 간 협력 등을 위하여 자율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신설></p>	<p>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</p>
<p>제9조~제17조</p>	<p><변경사항 없음></p>	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8조(사업비 지원)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며, 지급시기 및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도 대학별 사업비 규모를 확정하여 지원대학에 통보한다.</p> <p>③ 지원대학의 장은 매년도 사업비 확정 전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심의·의결된 예산을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, 사업비 교부 전 집행한 예산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회계연도 범위내에서 대체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④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평가 이전에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①~④ <좌동></p> <p>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></p>	<p>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(2020년 기본계획 반영)</p>
<p>제19조~제20조</p>	<p><변경사항 없음></p>	
<p>제21조(사업비의 이월) ①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10%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. 단, 사업개시 1차년도에 한하여 사업비의 30%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월현황을 차년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·관리·운영과 관련한 사업관리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.</p>	<p>① <좌동></p> <p>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, 제1항에서 정한 이월범위를 조정하거나, 이월현황을 차년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<좌동></p>	<p>2020년 기본계획 반영</p>
<p>제22조~제26조</p>	<p><변경사항 없음></p>	

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

현행	개정(안)	비고
<input type="checkbox"/> 목적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비 관리 및 회계연도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비 집행 및 정산	<변경사항 없음>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비 수혜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세부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(석사 2년, 박사 4년)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 ※ 입학전 신입생, 휴학생, 졸업생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등 직접 지원금은 불가능(단, 경진대회 입상 상금 등은 가능) -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협력 대학·기관과의 세부 사업 운영 및 지원비,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세부 사업 운영 및 지원비 등 집행 가능 ○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,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강의료, 원고료, 정책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‘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’으로 편성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집행 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비 수혜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좌동> ○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,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, 원고료, 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·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(운영수당, 연구용역비 등)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하며, - 강사료,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 ‘강사료(p.63~66)’ 기준을, 자문료 및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‘위원회 참석수당 등(p.62)’ 기준 내에서 사업추진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대학 자체기준(지침) 등을 마련하여 집행 - 연구용역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내(p.82~84) 세부기준 준용 	국립대학 회계 예산·집행지침 수정으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교연비 승인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내부 교직원의 강사료, 원고료, 연구비 등에 대한 편성방법 명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, 환경 개선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기자재구입비, 인건비 등에 사업비 집행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좌동> - 대학은 연도별 총 예산 범위내에서 각 세부내역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,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비 관리 책무성을 고려하여 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해야함<신설> 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계획 변경(예산변경)	<변경사항 없음>	

【별표1】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

※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“세출예산 성질과목 구분과 설정”을 따름

세부내역	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인건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(교원 및 전담직원)의 인건비(퇴직금, 4대보험 포함) ※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되며,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■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※ 사업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조교,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좌동> 	
<p>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■ 사업계획과 연관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, 동 사업을 위해 신규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(원고료, 정책연구비) 등* 지급 가능 * 단, 내부교직원에 지급하는 경비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교육·연구및 학생비용으로 편성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좌동> ■ 사업계획과 연관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, 동 사업을 위해 신규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- 단, 내부교직원에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·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(운영수당, 연구용역비 등)으로 편성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하며, -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 ‘강사료(p.63~66)’ 기준을, 심사료 및 저문료는 편성지침 내 ‘위원회 참석수당 등(p.62)’ 기준 내에서 사업추진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대학 자체 기준(지침) 등을 마련하여 집행 - 연구용역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내 (p.82~84) 세부기준 준용 	<p>국립대학 회계지침 수정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</p>

세부내역	현행	개정(안)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 ■ 학생 교육·연수·실습, 연구활동 관련 비용 ■ 사업계획과 관련된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비(연수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좌동> ■ <좌동> ■ <좌동> 	
네트워크 활성화 지원·운영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관련 지역발전 기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관련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연구,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- 산업체, 공공기관, 지자체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비용 - 기타 각종 교류·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 관련 소요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관련 지역사회 또는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관련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좌동> - <좌동> - 기타 각종 교류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비용, 네트워크 사업 추진 관련 분담금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협의체 회비 등 	<p>문구수정</p> <p>협의회 역할을 고려하여 분담금·회비 세부내역 명시</p>
강의실 및 실험·실습 실 등 환경 개선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강의실, 실험실, 실습실 등 사업 관련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·보수 가능 - 환경 개선에 따라 직접 사용되는 집기 구입비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좌동> 	
교육·연구 력 증진 및 실험·실습 기자재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·기자재 구입 및 리스(전자저널 포함)·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장비·기자재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 서류에 첨부 - 3천만원 이상 장비·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,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체 계획 변경 후 집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·기자재 구입 및 리스(전자저널 포함)·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비·기자재는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,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- 좌동 	<p>관리 책무성 강화</p>

세부내역	현행	개정(안)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※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‘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’에 따라 관리·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이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※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‘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’에 따라 관리·운영 	문구수정(국가연구개발 장비 관리지침 준용)
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※ 단,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※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·기준에 따라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좌동> 	
기타사업 운영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활동에 수반되는 경비(사업 총괄부서 운영비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수용비, 여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사업 추진부서 및 관련 인력 집기 구입비,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회비 등 ※ 홍보비는 사업 참여유도 또는 사업성과 홍보인 경우만 가능하되, 일반수용비에 편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활동에 수반되는 경비(사업 총괄부서 운영비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수용비, 여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사업 추진부서 및 관련 인력 집기 구입비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회비 등 ※ 홍보비는 사업 참여유도 또는 사업성과 홍보인 경우만 가능하되, 일반수용비에 편성 	협의회 회비는 네트워크활성화 지원·운영비 항목으로 변경